

# 감사위원회 규정 (안)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 2 장 구 성

### 제4조(구 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 장 회 의

### 제6조(종 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이사회 소집청구 및 직접 소집

##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인 선정 및 변경·해임
-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 (10)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1)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2)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3)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4)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5) 위원회 지원조직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제11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4 장 감사인의 선임 등

### 제13조(선임)

- ① 위원회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미리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4항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1>, <별표2>에 의한다.
- ⑤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외감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제13조2(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선정할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6. 외감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감사인이 동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16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 계약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위원 전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 제17조(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 제18조(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회 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위원회 지원조직을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 지원조직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지원조직은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 지원조직은 위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20조(주주총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 제21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4월 03일 제정

2019년 2월 28일 개정

[별 표] #1.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1) 배점기준을 4단계(A, B, C, D)로 지정함
- 2)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A점과 B점사이의 점수 차이를 크게 함
- 3) 배점에 동점자는 같은 등급을 부여하고 동수만큼의 상위등급은 제외하고 다음등급을 부여함
- 4) 평가요소가 많아 계량요소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서 평가하고, 비계량항목은 감사인 선임권자가 회계법인과의 대면면접(회계법인 프리젠테이션)시 평가 (별표#2)

| 구 분          |                          | 배점                      | 평 가 방 법  | 배 점 기 준  |   |     |     | 비 고 |  |
|--------------|--------------------------|-------------------------|--|--|---|-----|-----|-----|--|
|              |                          |                         |  | A  | B | C   | D   |     |  |
| 입찰가격         |                          | 10                      | .가격 평가 점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X 10<br>.예) A회계법인, B회계법인, C회계법인이 각각 100, 80, 50원을 감사보수로 제안한 경우<br>- A회계법인 5점 = [(50원/100원) X 10(배점)]<br>- B회계법인 6.25점 = [(50원/80원) X 10(배점)]<br>- C회계법인 10점 = [(50원/50원) X 10(배점)] |  |   |     |     |     |  |
|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 감사담당자의 경험                | 팀원의 평균 감사업무 수행기간        | 5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감사팀원의 평균 감사업무 수행기간이 많은 회계법인 별로 높은 점수 부여                    | 5 | 3   | 2   | 1   |  |
|              |                          | 파트너의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사회사 수 | 5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파트너의 최근 3년간 상장법인(시가총액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감사회사수가 많은 순서로 높은 점수 부여 | 5 | 3   | 2   | 1   |  |
|              |                          | 수습회계사 비율                | 5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감사팀원 수습회계사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5 | 3   | 2   | 1   |  |
|              | 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성             | 파트너의 동종 산업에 대한 누적 감사시간  | 4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담당파트너의 3년간 동종산업 누적감사 시간이 많은 순서로 높은 점수 부여                   | 4 | 3   | 2   | 1   |  |
|              |                          | 파트너의 동종 산업에 대한 감사회사 수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담당파트너의 최근 3년간 동종산업 감사횟수가 많은 순서로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                          | 매니저의 동종 산업에 대한 누적 감사시간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담당매니저의 3년간 동종산업 누적감사시간이 많은 순서로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                          | 매니저의 동종 산업에 대한 감사회사 수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담당매니저의 최근 3년간 동종산업 감사횟수가 많은 순서로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업무부담         | 파트너의 전체업무시간 대비 감사투입시간 비율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파트너의 직전연도 전체 업무시간 대비 감사투입 시간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 구 분                |                      | 배점  | 평 가 방 법 | 배 점 기 준   |   |     |     | 비 고 |      |
|--------------------|----------------------|---|---------|---|---|-----|-----|-----|------|
|                    |                      |   |         | A   | B | C   | D   |     |      |
| 감사업무<br>수행팀의<br>역량 | 매니저 및<br>스텝의<br>업무부담 | 매니저 및<br>스텝의<br>전체 업무시간<br>대비<br>감사투입시간<br>비율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매니저<br>및 스텝의 직전연도 전체 업무시간<br>대비 감사투입시간비율이 높을수록<br>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                      | 기말감사<br>기간동안<br>매니저 및<br>스텝의<br>감사 투입 시간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직전연도<br>회계법인 기말감사(1월~3월)에 해당<br>매니저 및 스텝의 평균 감사투입이<br>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 징계                   | 담당파트너의<br>징계 건수,<br>성격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담당<br>파트너의 징계건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부여                                       | 3 | 2   | 1.5 | 1   |      |
| 회계법인의<br>역량        | 내부<br>품질<br>관리       | 내부품질관리<br>정책 및 절차<br>적정성                      | 4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내부품질<br>관리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적정성이<br>높은 회계법인에 대해 높은 점수 부여                 | 4 | 3   | 2   | 1   | ·비계량 |
|                    |                      | 소속<br>공인회계사수<br>대비 품질관리<br>인력 비율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소속 공인<br>회계사 수 대비 품질관리인력의 비율이<br>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                      | 과거 3년간<br>품질관리감리<br>지적 건수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재무제표<br>감사건수 대비 품질관리 감리지적 건수가<br>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 독립성<br>및             | 독립성 준수를<br>위한 정책 및<br>절차의 적정성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독립성<br>절차의 적정성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해<br>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비계량 |
|                    | 법규<br>준수             | 기타<br>법규준수를<br>위한 정책 및<br>절차의 적정성             | 2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법규준수<br>절차의 적정성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해<br>높은 점수 부여                            | 2 | 1.5 | 1   | 0.5 | ·비계량 |
|                    | 과거<br>수행<br>업무의      | 최근 3년간<br>감리지적비율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재무제표<br>감사건수 대비 감리지적 회사수가<br>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 적정성                  | 최근 3년간<br>재무제표 재작성<br>비율                      | 2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재무제표<br>감사건수 대비 재무제표 재작성회사수가<br>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2 | 1.5 | 1   | 0.5 |      |

| 구 분     |                    | 배점               | 평 가 방 법   | 배 점 기 준  |  |     |     | 비 고 |      |
|---------|--------------------|------------------|---|--|--|-----|-----|-----|------|
|         |                    |                  |   | A  | B  | C   | D   |     |      |
| 감사수행절차의 | 투입인력               | 5                | ·회사가 판단 <sup>1)</sup> 하는 적정 감사투입인력 대비 제안서상 인원차이가 적게 나는 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5  | 3  | 2   | 1   |     |      |
|         | 및<br>시간의           | 5                | ·회사가 판단 <sup>1)</sup> 하는 적정 감사투입시간 대비 제안서상 시간차이가 적게 나는 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5  | 3  | 2   | 1   |     |      |
|         | 적정성                | 5                | ·회사가 판단 <sup>1)</sup> 하는 적정 감사단계 (분기감사, 기말감사, 재고실사 등)대비 제안서상 차이가 적게 나는 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5  | 3  | 2   | 1   |     |      |
|         | 업무<br>관련<br>여도     | 파트너 투입<br>시간 비율  | 3   | ·회사가 판단 <sup>1)</sup> 하는 파트너의 업무 관여도가 높은 회계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 1    |
|         |                    | 매니저 투입<br>시간 비율  | 3   | ·회사가 판단 <sup>1)</sup> 하는 매니저의 업무 관여도가 높은 회계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 1    |
|         | 적정성 <sup>2)</sup>  | 감사<br>계획         | 위험분야 파악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에 판단한 위험분야(영업권 손상, 우발부채 등)가 논리적인 회계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3   | 2   |     | 1.5  |
|         |                    | 인력배정 및<br>투입시간   | 2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에 위험분야 인력배정 및 투입시간이 많은 회계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2  | 1.5 | 1   | 0.5 |      |
|         | 전문가<br>활용          | 전문인력<br>활용계획     | 2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에 IT감사, 파생상품 분야등의 전문인력 활용계획이 적정한 회계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2  | 1.5 | 1   | 0.5 | ·비계량 |
|         | 커뮤<br>니<br>케이<br>션 | 감사위원회와<br>커뮤니케이션 | 2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에 감사 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적정한 회계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2  | 1.5 | 1   | 0.5 | ·비계량 |

※ <sup>1)</sup> 회사가 판단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 적용

<sup>2)</sup>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구시) 감사후보 중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감사계획을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항목에 가산점 부여

[별 표] #2. 대면회의 평가항목

| 구 분                      | 배점 | 평 가 방 법  | 배 점 기 준 |     |     |     | 비 고 |
|--------------------------|----|--|---------|-----|-----|-----|-----|
|                          |    |  | A       | B   | C   | D   |     |
| 내부품질관리<br>정책 및 절차<br>적정성 | 4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내부품질<br>관리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적정성이<br>높은 회계법인에 대해 높은 점수 부여  | 4       | 3   | 2   | 1   |     |
| 독립성 준수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독립성<br>절차의 적정성이 높은 회계법인에<br>대해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법규준수                     | 2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법규준수<br>절차의 적정성이 높은 회계법인에<br>대해 높은 점수 부여             | 2       | 1.5 | 1   | 0.5 |     |
| 위험분야 파악                  | 3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에 판단한<br>위험분야(영업권 손상, 우발부채 등)가<br>논리적인 회계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3       | 2   | 1.5 | 1   |     |
| 전문가 활용                   | 2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에 IT감사,<br>파생상품 분야등의 전문인력 활용계획이<br>적정한 회계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2       | 1.5 | 1   | 0.5 |     |
| 감사위원회와<br>커뮤니케이션<br>방법   | 2  |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상에 감사<br>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br>적정한 회계법인에 높은 점수 부여        | 2       | 1.5 | 1   | 0.5 |     |